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8
------------	------

발의 연월일 : 2009. 11. .
발 의 자 : 정진교 의원
외 5인

□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조잔디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의 유료 전환,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방 체육시설의 운영계획을 고지하고 개방제한에 대한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 시설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3조)
- 사용허가 사항의 양도나 대여 금지 조항 신설(안 제4조)
- 사용허가 우선 순위 관련 문구 정비(안 제5조)
- 전용사용료의 감면 대상 중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넣어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10조)
- 체육시설의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대상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안 제13조)
-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의 종류와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인력 채용 규정 신설(안 제20조)
- 사용료 책정이 개별 운동장 명칭으로 되어 있어 추가 인조잔디축구장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마사토 운동장, 풋살경기장 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함.(안 별표1, 별표2)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습사용” 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8.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원칙)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위탁)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부 단체의 독점사용,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 ④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또는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2. 스포츠교실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4. 안전사고 발생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이용 시에 현저한 위험 및 불편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개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행사)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각급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5. 체력단련 등의 연습사용

제6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기 : 06:00 ~ 09:00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3:00

제8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되, 별표 4에 따른 상업사용료 중 사용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9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와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 나.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3.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4. 노인, 장애인, 수급자, 군인, 어린이, 청소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 사용료의 4할

 나. 사용개시 10일전까지 : 사용료의 6할

 다. 사용개시 20일전까지 : 사용료의 8할

 라. 사용개시 30일전까지 : 전액

2. 중계방송사용료 :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

3. 연습이용료

 가. 사용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일할계산하여 남은 잔액반환

②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
5. 그 밖에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 (사용자의 권리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설하여 체육시설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운영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 산 와 ~ 스 타 디 움	육상장 (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 구 잔 디 구 장	주 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 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실내체육관 국궁장	주 간	23,000	35,000	46,000	70,000		
	야 간	35,000	50,000	70,000	100,000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주 간	60,000	90,000	120,000	180,000		
	야 간	100,000	130,000	160,000	220,000		
인조잔디축구장	주·야간	60,000	90,000	120,000	180,000		
테니스장	주 간	7,000	10,000	-	-		
	야 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주 간	10,000	15,000	15,000	20,000		
풋살경기장(인조잔디)	주 간	3,000	4,500	6,000	9,000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국궁장·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한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개인	단체
안산 와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육상장 (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실내체육관 국궁장		1인 2시간	1,200	600
인조잔디축구장		-	1,200	600
테니스장	주간	-	3,000	1,500
	야간	-	5,000	1,500
체력단련장	월		30,000	-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립테니스장의 월회원은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000 원으로 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체력단련장은 전용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T V		라디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체육경기(행사)	100,000	60,000	50,000	30,000
	일반행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비 고	1. 프로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2. TV녹화, 라디오녹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별표 4]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分	기 준	요 금
영화촬영 (C·F 포함)	주 간	100,000원
	야 간	150,000원
애드벌룬	1일 1개	5,000원
선전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	연 간	500,000원 (10m ² 이내) 350,000원 (6m ² 이내)
	5일이내	50,000원 (10m ² 이내) 30,000원 (6m ² 이내)
	1일초과	10,000원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판매액의 10%
기타물품 판매	판매수량 × 1개당 가격	판매액의 10%
비고	1.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m ²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과 애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해태시 사용초과료를 징수한다. 4.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내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구 分		사 용 료
라이트시설	안산 와~ 스타디움	(라이트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라이트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5,000원
무대조명		1시간 20,000원
냉 난 방	개별 냉 난방기	냉방 :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 1대당(1시간) 10,000원
	중앙 냉 난방기	냉방 : 1시간 35,000원 난방 : 1시간 45,000원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	안산 와~스타디움	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0,000원
음향시설		4시간 20,000원
영사기		1시간 20,000원
농구콜대		1일 50,000원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938
----------	------

제안년월일 : 2009. 12. 24.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고, 2009. 10. 16 개정된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조항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제5조 3호의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5조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8조 제2항 별표 2 연습사용료 비고란의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에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건립한 체육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어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 -----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원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부 단체의 독점사용,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④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또는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원칙) ①(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 시민 ----- ----- ----- ----- ④ ----- ----- ----- 시민 ----- -----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생략) 1. (생략) 2. (생략) 3.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생략) 5. (생략) 〈신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시민 ----- ----- 4. (원안과 같음) 5. (원안과 같음)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군연, 전람, 전시 등

개정안

수정안

[별표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개인	단체
안산 와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유성점 (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실내체육관 국·공·장	1회 2시간	1,200	6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2시간	1,200	600
테니스장	주간	1회 2시간 3,000	1,500
	야간	1회 2시간 5,000	1,500
체력단련장	일	30,000	

-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시립테니스장의 월회원은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비고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정수한다.
- 조·증·교 및 도·지 대교설수단의 강화
호전을 위한 무료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
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 체력단련장은 전용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개인	단체
안산 와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유성점 (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실내체육관 국·공·장	1회 2시간	1,200	6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2시간	1,200	600
테니스장	주간	1회 2시간 3,000	1,500
	야간	1회 2시간 5,000	1,500
체력단련장	일	30,000	

-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시립테니스장의 월회원은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정수한다.

- 조·증·교 및 도·지 대교설수단의 강화
호전을 위한 무료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
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산시 대자녀 가정 지원 및 혜택」
제3조의 자녀 대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사용료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 체력단련장은 전용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비고